

2026년 누구나 돌봄 서비스 제공 협약서

【제공서비스 : 생활돌봄, 동행돌봄】

경기도 “안양시” (안양시의 “행정복지센터”를 포함, 이하 “시”라 한다)와 “아름다운사람들 재가장기요양센터” (이하 “제공기관”이라 한다)는 「누구나 돌봄」 서비스 제공을 위한 세부시행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.

제1조(목적)

본 협약은 “시”와 “제공기관”의 「누구나 돌봄 서비스 제공」에 필요한 제반 권리 및 의무를 규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.

제2조(신의 성실의 원칙)

“시”와 “제공기관”은 본 협약을 체결하고 이행함에 상호 의사를 존중하며, 신의 성실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.

제3조(협약기간)

- ① 협약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- ② 협약기간은 협약 만료 30일 전에 협약 당사자의 합의하에 연장할 수 있다.

제4조(협약 당사자의 역할과 의무)

본 협약의 당사자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역할을 담당한다.

- ① “시”는 「누구나 돌봄」으로 접수된 서비스 대상자의 인적사항과 필요한 서비스를 기재하여 “제공기관”에게 서비스 의뢰한다.
- ② “제공기관”은 “시”로부터 의뢰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계약체결, 보험가입, 이용금액 안내 등의 절차 및 서비스 제공을 진행하며, 서비스 제공 내용 및 방법에 대하여 “시”와 상호 협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다.
- ③ ‘서비스 이용자’의 상태 변화 등에 대해 인지할 시 ‘즉시’ 상황을 알리고 서비스 변경·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.
- ④ “제공기관”은 서비스 제공 완료 후 서비스 제공 결과보고서를 작성해 “시”에 제출한다.
- ⑤ ‘제공기관’은 ‘시’의 사전 동의를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, ‘시’와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 할 수 없다.
- ⑥ ‘제공기관’은 「누구나 돌봄」사업 추진과 관련된 교육은 필수로 이수해야 하며, ‘제공기관’은 ‘시’에서 실시하는 모니터링, 사업 운영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- ⑦ ‘제공기관’은 사전 협의 없이 휴업, 서비스 제공거부, 안전사고 발생 등의 부당행위를 할 수 없다. 이 경우 「누구나 돌봄」사업 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취소 및 서비스 제공 수가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
- ⑧ “시”는 “제공기관”의 서비스 제공 결과보고서를 확인 후 협의된 서비스 수가기준에 의한 서비스 비용을 “제공기관”에게 지급한다.

제5조(서비스 비용 정산)

- ① 서비스 비용은 별도의 ‘서비스의 수가 구성 및 이용기준표’에 의한 비용 산정을 통해 “제공기관” 서비스 제공 결과에 따라 “시”가 지급한다. 단, 서비스 비용 전액 자부담 대상자의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 전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, “시”와 “제공기관”이 협의를 통해 서비스 제공 후 지급할 수도 있다.
- ② 서비스 비용 정산은 분기별, 월별, 매진별 등 “시”와 “제공기관”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으며, 이 건 협약 “제공기관”과의 서비스 비용 정산은 “월별”로 정한다.

제6조(보안 및 안전관리)

- ① “제공기관”은 대상자의 인적사항 및 상담내용 등 업무관련으로 습득한 개인정보에 대해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.
- ② “제공기관”은 서비스 제공 인력의 질적 관리(자격증, 비밀보장, 성범죄 이력조회 등) 및 안전관리, 사고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제공 인력에게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
제7조(장부 등의 비치)

“제공기관”은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장부 및 서류를 비치하고 정확히 기록·유지해야 한다.

제8조(협약의 해지)

- ① “제공기관”은 “시”의 서면동의 없이 이 협약서의 내용 및 기타 약정사항을 변경하지 못한다. 다만, 본 약정체결 후 “시”가 추가로 필요하여 요구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별도 협의를 통해 정한다.
- ② “시”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.
 1. “제공기관”이 협약사항을 위반 또는 불이행하는 경우
 2. “제공기관”이 사업을 부실하게 하거나, 태만하게 추진하는 경우
 3. “제공기관”이 사업을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고 “시”가 인정하는 경우

제9조(협약의 효력 등)

- ① 이 협약은 서명일부터 협약사항을 이행완료하거나 협약이 해지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. 다만, 민·형사상의 사건·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·사고가 종료 되는 때까지 관련 조항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.
- ② 이 협약체결을 증명하고 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“시”와 “제공기관”이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.

제10조(준용)

이 협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, 시행지침 그 밖에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.

2025년 12월 29일

안 양 시
최 대



아름다운사람들 재가장기요양센터
대 표 한 정 순

